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주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6. 5.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년 5월 24일
- 나. 제출자 : 김용범 의원 외 5인
- 다. 회부일자 : 2013년 5월 31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7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 6. 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용범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의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주민 및 단체 등에 수여하는 영등포구 구민상 수여대상 및 후보자 추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구민상의 시상부분은 다음 각 호로 하되,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은 개인 및 단체에 각각 시상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3조제1항)
- 수상후보자는 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각 관공기관 및 단체장, 학교장 또는 주민 3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국민 및 단체 등에게 수여하는 영등포구 구민상 수여대상 및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총 10개 부문으로 하되,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은 개인 및 단체에 각각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8조에 수상후보자에 대한 주민 추천인수를 10명에서 30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추천조건을 강화함.
 - 그 밖에 부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민상 일부 부문의 수여대상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확대하여 국민의 구정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수상후보자의 추천조건을 강화하여 영등포구 구민상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개인 및 단체에게 각각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구민상 시상 부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함.

나. 주요골자

- 안 제3조 제1항 중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을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 교육상, 환경상”으로 한다.

5.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상 및 모범주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4
----------	-----------

제안년월일 : 2013. 6.

제출자 : 김화영 위원외 1인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개인 및 단체에게 각각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상 시상 부분의 일부 내용을 수정함.

2. 주요골자

- 안 제3조 제1항 중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을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 교육상, 환경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주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주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 제1항 중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을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 교육상, 환경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수상대상) ① 국민상은 시상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민이나 소재하는 기업체(대표) 및 <u>단체(원)로서</u> 각 분야에서 국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준다.</p> <p>② ~ ⑥ (생략)</p> <p>제3조(국민상 및 표창의 종류) ① 국민상은 10개 부문으로 하되 다음과 같다.</p> <p>1. ~ 10. (생략)</p> <p>② (생략)</p> <p>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u>범위</u>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조(수상대상) ① ----- ----- ----- ----- ----- <u>단체(원)</u> <u>로서</u> 타의 귀감이 되고 - ----- -----.</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3조(국민상 및 표창의 종류) ① <u>국민상의 시상부</u> 문은 다음 각 호로 하되, <u>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은 개인 및 단</u> 체에 각각 시상할 수 있 <u>다.</u></p> <p>1. ~ 10.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수당) ----- ----- -----<u>범위</u>----- ----- -----.</p>	<p>제2조(수상대상) ① ----- ----- ----- ----- ----- <u>단체(원)</u> <u>로서</u> 타의 귀감이 되고 - ----- -----.</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3조(국민상 및 표창의 종류) ① <u>국민상의 시</u> 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되, <u>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 교육상, 환경상은 개인 및</u> 단체에 각각 시상할 수 <u>있다.</u></p> <p>1. ~ 10.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수당) ----- ----- -----<u>범위</u>----- ----- -----.</p>

제1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구민상은 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각 관
계기관과 관제 단체장,
학교장 또는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
다.

② · ③ (생략)

제1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

3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
천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

3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
천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
----------	-----

발의연월일 : 2013년 5월 일

발 의 자 : 김용범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지역의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 및 단체 등에게 수여하는 영등포구 구민상 수여대상 및 후보자 추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되,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은 개인 및 단체에 각각 시상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3 조제1항)

나. 수상후보자는 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각 관계기관 및 단체장, 학교장 또는 구민 3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합 의 :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단체(원)로서”를 “단체(원)로서 타의 귀감이 되고”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되,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은 개인 및 단체에 각각 시상할 수 있다.”

제13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구민상은”을 “수상후보자는”으로, “1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를 “3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수상대상) ① 구민상은 시상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이나 소재하는 기업체(대표) 및 단체(원)로서 각 분야에서 구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준다.</p> <p>② ~ ⑥ (생략)</p>	<p>제2조(수상대상) ① ----- ----- ----- ----- 단체(원)로서 타의 <u>귀감이 되고</u> ----- -----.</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민상 및 표창의 종류)</p> <p>① <u>구민상은 10개 부문으로 하되 다음과 같다.</u></p> <p>1. ~ 10.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구민상 및 표창의 종류)</p> <p>① <u>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되,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은 개인 및 단체에 각각 시상할 수 있다.</u></p> <p>1. ~ 10.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수당) ----- ----- ---- 범위----- -----.</p>
<p>제1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구</p>	<p>제1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p>

민상은 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각 관계기관과 관계 단체
장, 학교장 또는 구민 10명 이
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②、③ (생 략)

상후보자는 -----

----- 30명 이
상의 연명으로 추천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상 및 모범주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4
----------	-----------

제안년월일 : 2013. 6.

제출자 : 김화영 위원외 1인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개인 및 단체에게 각각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상 시상 부분의 일부 내용을 수정함.

2. 주요골자

- 안 제3조 제1항 중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 을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 교육상, 환경상”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주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주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 제1항 중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을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 교육상, 환경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수상대상) ① 국민상은 시상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민이나 소재하는 기업체(대표) 및 <u>단체(원)로서</u> 각 분야에서 국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준다.</p> <p>② ~ ⑥ (생략)</p> <p>제3조(국민상 및 표창의 종류) ① 국민상은 10개 부문으로 하되 다음과 같다.</p> <p>1. ~ 10. (생략)</p> <p>② (생략)</p> <p>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u>범위</u>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u>국민상은</u> 구청장이 공</p>	<p>제2조(수상대상) ① ----- ----- ----- ----- ----- <u>단체(원)</u> <u>로서</u> 타의 귀감이 되고 - ----- -----.</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3조(국민상 및 표창의 종류) ① <u>국민상의 시상부</u> 문은 다음 각 호로 하되, <u>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은 개인 및 단</u> 체에 각각 시상할 수 있 <u>다.</u></p> <p>1. ~ 10.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수당) ----- ----- -----<u>범위</u>----- ----- -----.</p> <p>제1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u>수상후보자는</u> -----</p>	<p>제2조(수상대상) ① ----- ----- ----- ----- ----- <u>단체(원)</u> <u>로서</u> 타의 귀감이 되고 - ----- -----.</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3조(국민상 및 표창의 종류) ① <u>국민상의 시</u> 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되, <u>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 교육상, 환경상은 개인 및</u> 단체에 각각 시상할 수 <u>있다.</u></p> <p>1. ~ 10.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수당) ----- ----- -----<u>범위</u>----- ----- -----.</p> <p>제1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u>수상후보자는</u> -----</p>

고하는 기간 내에 각 관
계기관과 관계 단체장,
학교장 또는 주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
다.

② · ③ (생 략)

3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
천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3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
천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